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3
----------	------

제출일자: 2013. 3. 7.

제출자: 광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명 및 조문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 제정된 해당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개정 내용 반영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다. 조례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개정

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자구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2. 15.~3. 6.)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각 호외 부분의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로 하고, 같은항 제3호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 각 호외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제6조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계약시”를 “계약 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계약시”를 “계약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같은항 제2호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같은항 제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같은항 제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고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 각 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관련정보”를 “관련 정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u>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u>친환경상품</u>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친환경상품</u>”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u>친환경상품</u>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u>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u></p> <p>3.~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친환경상품</u> 의무구매제의 이행</p> <p>제4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u>친환경상품 구매·생산</u>을 <u>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u>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u>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u>」----- ----- -----<u>녹색제품</u>----- -----</p> <p>제2조(정의)----- -----</p> <p>1. “<u>녹색제품</u>”----- -----</p> <p>2. (현행과 같음)</p> <p>3. ----- -----<u>녹색제품</u>----- -----</p> <p>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u></p> <p>3.~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녹색제품</u> -----</p> <p>제4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 -----<u>녹색제품 구매·생산</u>을 <u>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u>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생략)

제7조(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②-----
----- 포함한다.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녹색제품 -----

4. -----녹색제품 -----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녹색제품-----

-----녹색제품-----

② -----녹색제품 -----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2. ----- 구청장이 녹색제품-----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구매실적 관리)

-----녹색제품-----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2. 녹색제품 -----

3. (현행과 같음)

제7조(구매의무 등) ① -----

-----녹색제품-----

1. (현행과 같음)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생략)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생략)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생략)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

2. ----- 계약시-----

3. ----- 계약시-----

② -----

-----녹색제품-----
-----.

1. -----녹색제품-----

2. (현행과 같음)

3. 녹색제품-----

4. (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녹색제품-----
-----녹색제품-----
-----.

1. 「-----대기환경개선에 -----
-」-----

2.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녹색제품 -----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녹색제품-----

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자 또는 보조

2. 친환경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1. 녹색제품-----

2. 녹색제품-----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녹색제품-----

-----관련 정보-----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

-----녹색제품-----

-----녹색제품-----
-----.

② -----관계 기관-----

-----녹색제품-----
-----.

③ -----녹색제품-----

제12조(포상) -----녹색제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4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개정하는 용어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님

4. 작성자

환경과 행정8급 김나진(450-7798)